

---

# 2024년 지역 문화예술 정책사업 설명회

---

2024. 1. 17.



문화체육관광부

# I. 설명회 개요

- (행사명) 2024년 지역 문화예술 정책사업 및 로컬100 설명회
- (일시/장소) '24.1.17.(수) 13:00~17:4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대상) 전국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민간기관, 단체 등
- (주요내용)
  - 1부 : 주요 정책사업 소개 및 공모사업 등 관련 질의응답
  - 2부 : 로컬100 민관협력 홍보 관련 전문가 강연 및 질의응답

## □ 설명회 세부일정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2:40~12:55 (15분)	○ 참가자 등록	
<b>1부</b>	<b>2024년 주요 정책사업 설명회</b>	
13:00~13:05 (5분)	○ 인사말씀	
13:05~14:30 (85분)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향유 지원사업 - 구석구석문화배달, 청춘마이크, 실버마이크 ○ 취약지역·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전국 문화예술 창제작유통 지원사업 ○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정책사업 ○ 문화영향평가 정책	사업별 담당자 설명(5~10분)→ 일괄 질의응답 순
14:30~14:50 (20분)	○ 장내정리	
<b>2부</b>	<b>로컬100 사업설명회</b>	
14:50~15:00 (10분)	○ 인사말씀	
15:00~17:40 (160분)	○ 로컬100 소개 ○ 전문가 강연 - 로컬100 연계 상품화 사례, 지역특화형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방안 등 ○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로컬100 해당 지자체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참석

## II. 사업별 설명자료

### 1 문화가 있는 날

#### □ 사업개요

- (목적)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국민 문화향유 확대
  - \* 법적근거 : 문화기본법 제12조 / 지정 : '13년~
- (주요 내용)
  - ① (시설·프로그램 혜택) 전국 다양한 문화기관 및 기업 등 참여로 연중 20,000여곳 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관람 등 혜택
    - (문화시설) 지역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작은도서관·문화원·문화의집·문화재단 등 다양한 문화시설 연계, 협력
    - (민간기업) 영화할인(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스포츠 경기 입장료 할인(KBO 등), 문화강좌 할인, 숙박할인 등 제공

분 야	내 용
영 화	저녁 5시~9시, 일괄 7천원 관람(매달 전국 400개 내외 영화관 참여)
공 연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및 민간공연 할인 및 무료 제공(약 200개)
전 시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 무료·할인, 연장 개관(약 500개)
문화재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조선왕릉 등 무료 개방(약 50개)
도서관	야간 연장개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2배 대출 등(약 900개)
기 타	기타 문화시설, 프로스포츠 할인(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 【 '문화가 있는 날' 주요 성과 】

- 문화향유 대표브랜드화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인지도 68%('23년, 국민 7,000명 대상)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민간 자발적 참여 + 국고보조 기획프로그램 협력, 선순환 효과
  - \* '문화가 있는 날' 참여프로그램은 15,962개('14년)→ 23,402('22년)으로 46% 증가
  - \* '22년, 민간 프로그램은 19,661개로 국고보조 기획프로그램(3,741개)의 5배
- '일상' 속 문화향유 확산 : 언제(특별한 날→ 평일), 어디서나(문화시설→ 거리, 직장 등), 누구나(유아, 청년, 노년 등)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②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추진

- 기존 시설·대상별 사업\*을 지역 통합지원 형식으로 재구조화('24~)
  - \* 문화가 있는 날 참여문화시설 지원 + 직장문화활동지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 구석구석 문화배달
- 향후 문체부 내 국민 문화향유 지원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로 통합·대표브랜드화 예정('25년~)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23.12) 中 '문화예술 지원사업 재구조화'(안) >

· 기존의 소액·다건 유사 중복 사업을 '유통'과 '향유',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집행 효율화 및 대표 브랜드 사업화

<기존>		<재구조화안>
전국 공연예술 창작작 유통 협력생태계 구축 (예경, '23년 156억)	→	<b>유통</b> ['24년 <b>完</b> ]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400억)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한문연, '23년 19억)		
방방곡곡 문화공감 (한문연, '23년 177억)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 (각 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문원, '24년 166억)	→	<b>향유</b> ['25년] 문화가 있는 날
신나는 예술여행 (문예위, '24년 185억)		
국가 간 문화교류 (코피스, '24년 209억)	→	<b>국제교류</b> ['25년] (가칭) K-아트 해외진출
시각예술의 국제화 (예경, '24년 18억)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예경, '24년 47억)		
공연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 (예경, '24년 7억)		

③ (청년·어르신 특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청년(19~34세) 및 어르신(60세 이상)이 지역에서 펼치는 거리공연 '청춘·실버마이크' 추진

- (청춘마이크) 지역의 청년예술가 선발,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으로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16년~)

\* 2016년~2022년, 총 2,657팀 선발, 13,333회 공연, 약 197만 명 관람

- (실버마이크) 문화활동의 적극적 주체인 新노년 모델상 제시('22년~)

※ 사업방식 변경, 문화기업 참여 확대 및 경쟁 통한 질적 제고('24년)

□ 정책목표

※ 동 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사업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 민관 협업을 통해 연중 문화향유 제공 ⇨ 지역 정주민족도 향상
- 취약지역·혁신도시 집중지원 ⇨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 문화지구 활성화 ⇨ 지역 특화 문화브랜드 창출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명) 문화가 있는 날 - 구석구석 문화배달
- (지원기간) '24년 3월 ~ 11월
- (지원대상) 문화환경취약지역·혁신도시·문화지구
  - \*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필요성 감안, 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선택과 집중(지역문화진흥법·혁신도시특별법 등)
- (사업예산) '24년 61.5억 원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 보조사업자 : 지역문화진흥원
- (지원내용)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지역 수요·특성 기반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 세부 내용

① 활력촉진형 : 광역단위 공모

- (지원대상)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환경취약지역(69개소/개별 안내)· 「혁신도시특별법」상 혁신도시(10개소)
- (지원방식) 광역단위 공모(광역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제출)
  -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
- (해당지역) 취약지역·혁신도시가 포함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별 분포 : 부산(혁신1), 인천(취약1), 대구(취약1, 혁신1), 울산(혁신1), 충북(취약5, 혁신1), 충남(취약3), 전북(취약10, 혁신1), 전남(취약15, 혁신1), 경북(취약 16, 혁신1), 경남(취약9, 혁신1), 강원(취약9, 혁신1), 제주(혁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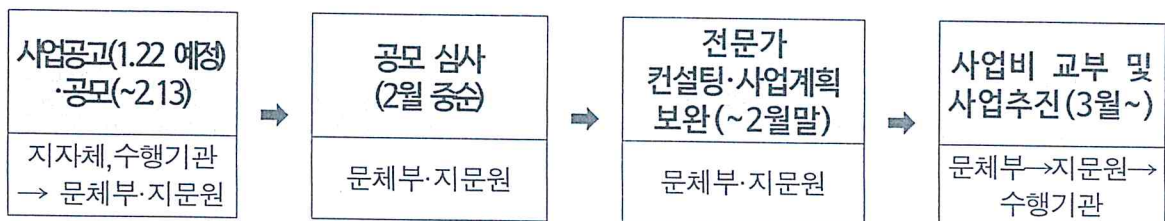


- (지원내용)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및 정주민족도 향상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 \* 광역 내 사업추진방식 및 역할분담은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 국비 지원액은 혁신도시·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 추가 지원(매칭 예산)을 통해 권역 내 타 지역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1개 광역당 총사업비 10억원 내외, 6개소 내외
  - \* 소관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매칭 필수
  - \* 신청 수요, 광역 내 취약지역·혁신도시 개소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고려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② 미래선도형 : 기초단위 공모

- (대상)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문화지구
  - \* 현 문화지구 6개소 및 상반기('24.6.30.) 내 문화지구 지정절차가 완료 예정인 곳 포함(단, 기한 내 미지정시 하반기 사업예산 미교부 가능)
- (지원방식) 기초단위 공모(기초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제출)
  -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
- (지원내용) 문화지구 콘텐츠 특화 및 방문객 유입 등 활성화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규모) 1개소당 총사업비 6억원 내외, 총 3개소
  - \* 소관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필수

### □ 추진일정



<신청시 유의사항>

\* (예산)

- 유형① : 소관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매칭 필수
- 유형② : 소관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필수

\* (추진체계) 사업신청시 지자체-수행기관 간 업무협약서 제출  
(사업공고시 양식 별첨 예정)

\* (지원조건)

①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필수

- 하드웨어 조성비 지원 불가
- 단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등) 지원·교육성 사업 지양
- 문체부 <신나는 예술여행>,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② 전문가 현장 및 서면컨설팅(연간 2회) 결과를 사업계획 및 추진시 성실히 반영

③ 성과평가(중간/최종, 2회)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연말, 1회) 참여 및 매월 프로그램 추진성과 제출

\* (공모우대) 아래 해당시 평가점수(총 100점)에 추가 가점 부여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연계 활용시(+5점)  
(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 불가)
- 문체부 및 타부처 지원사업·인프라 연계 추진시 가점(+3점)

■ 사업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16)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02-2623-3141)

정책목표**정책  
목표**

사업 권역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수준 높은 청춘마이크 공연으로 이용자 체감도·만족도 제고  
 공연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 지역 활동 기반 강화 및 성장도모

 사업개요

- (사업명) 2024 청춘마이크
- (사업예산) '24년 6,700백만원
- (사업유형) 용역/입찰\*(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주관단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위해 선정방식 변경(공모→ 입찰)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권역별 주관단체(10곳)에서 청년예술가와 함께, 지역 내 거점공간(장소)에서 공연 기획·운영(권역별 연간 20회 내외)
  - (권역배분) 전국을 일정 권역으로 배분, 권역별 주관단체 선정

\* 권역 내 지역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거리, 광장 등 다중밀집장소를 선정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2회 내외 균등 공연 추진  
 \*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 30% 이내 반영(서울·경기·제주 등 취약지역이 없는 곳은 문화지구, 로컬100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간 30% 반영)

- (지원대상) 권역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을 기획·운영할 역량있는 문화기업
- (지원규모) 권역 당 4억원 내외\*(청년예술가 공연사례비 포함)
  - \*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 규모에 따라 차등예정

- ▣ 공모 안내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 사업 문의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02-2623-3126)



## 붙임3

## <실버마이크> 사업계획(안)

### □ 정책목표

#### 정책 목표

세대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신노년세대의 문화활동 참여 계기 마련 및 사회적 역할 부여  
문화 생산 주체로서 신노년세대의 문화 향유 다양성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2024 실버마이크
- (사업예산) '24년 2,500백만원
- (사업유형) 용역/입찰(제한경쟁입찰)
  - \* 주관단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위해 선정방식 변경(공모→입찰)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권역별 주관단체(6곳)에서 실버예술가와 함께, 지역 내 거점공간(장소)에서 공연 기획\*·운영(권역별 연간 14회\* 내외)
  - \* 실버예술가 인생서사 및 래퍼토리가 있는 해설형 공연으로 관객과 공감·소통의 장 마련 및 공연의 완성도 제고
  - (권역배분) 전국을 일정 권역으로 배분, 권역별 주관단체 선정
    - \* 권역 내 지역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거리, 광장 등 다중밀집장소를 선정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2회 내외 균등 공연 추진
- (지원대상) 권역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공연을 기획·운영할 역량있는 문화기업
- (지원규모) 권역 당 3억원 내외\*(실버예술가 공연사례비 포함)
  - \* 참여하는 실버예술가 규모에 따라 차등 예정

▣ 공모 안내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 문의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02-2623-3105)

## 2

# 문화취약지역·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신규)문화취약지역 · 인구감소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사업유형) 민간경상보조 / 공모
- (주요내용)
  - 문화취약지역 ·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해당 지역 인근 예술가(단체) 등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 미술관, 문예회관 등) 및 마을 내 공간(마을회관·경로당 등)에서 마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 (지원규모) 미정(사업계획 수립중)

#### □ (향후계획) '24. 3-4월중 공모예정(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문화예술 접근성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사업유형) 민간경상보조 / 공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방식	비고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강사파견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군장병·재소자·지역아동센터·학교밖청소년·사각지대)	단체공모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누림	시설공모	플랫폼을 통한 강사(단체) 매칭 후 공모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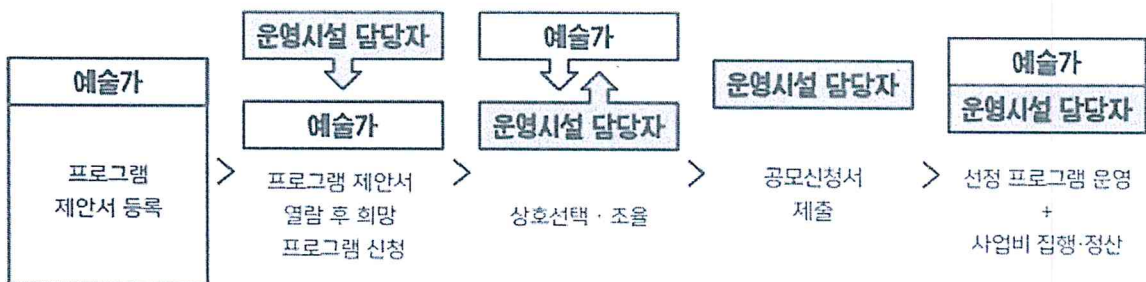
□ '예술누림' 추진계획

- (추진방향) 강사과건·단체공모방식에서 수혜시설 선택형(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점진적 개편 추진
- (지원대상)
  - (운영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대상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
아동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성인 노인	자립준비청년전담지원기관, 노숙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보훈복지문화대학) 등
전 생애 (가족 등)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해바라기센터 등
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등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강사과건사업에 미선정된 시설에 한정 또는 후순위 선정  
\*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는 '24년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지원대상시설로 제외

- (예술가)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또는 지원분야 활동 경력 보유자
- (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 및 단체
- (지원규모) 총 650여개 프로그램(프로그램 당 1,250만원)  
※ 운영시설 1개소 당 최대 3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추진절차)



- (향후계획) 진흥원 사업설명회(1.26), 플랫폼 등록(1.29~2.16), 공모 신청 및 선정(2~3월중)



### 3

##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운영 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향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뮤지엄 축제 “박물관·미술관 주간” 운영 및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내실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2(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6조(평가인증) 등

### ○ (주요내용)

- (2024 박미주간) 세계 박물관의 날(5.18.) 계기 박물관·미술관이 공동으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뮤지엄 축제

\* 매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선정하는 주제(‘24년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에 맞춰 기획

- (사전평가 제도) 신규로 설립(증축 이전 포함)하는 모든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설립계획, 기반 환경, 소장품 확보, 운영역량 등의 내실화를 위해 설립 이전에 사전 점검하는 제도(연 2회/상·하반기)

- (운영역량 강화지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시행에 따른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 2024년 추진계획

- 참여기관 공모(1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운영(5월)

\* 세부내용 <붙임1>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전공고’ 참고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2회, ‘24년 2~4월/ 8~10월)

\* 세부내용 <붙임2>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참고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역량 강화 지원(‘24년 3~12월)

\* 세부내용 <붙임3>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역량 강화 지원’ 참고

**□ 공모 개요**

- (참여자격) 등록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협회·재단·기관(단, 관련 단체·협회 등은 박물관·미술관과의 공동수급 방식만 가능)
- (운영 기간) 박물관·미술관 주간 기간(5.2.~5.31.) 포함 3개월 내외
- (지원 형태) 민간경상보조
- (공모 내용) 주간 기간에 운영될 신규 프로그램 기획·제작
  - (주 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Museums for Education & Research)
  - (장 르) 특별전시, 체험형 교육, 공연, 워크숍 등 \*2개 장르 이상 복합 가능

**□ 지원 규모 및 금액**

- (선정 프로그램 수) 총 34개관 내외(공동수급 가능)
- (지원 금액) 관별 10백만원~50백만원 내외
  - 지원금 총액 : 820백만원
  - 사업내용, 운영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작품제작비, 전시환경 조성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경비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PT 심사
- (심사 기준) 1·2차 심사 동일 기준(프로그램 우수성, 기대효과 등) 적용, 고득점 순 선정
- (심사 일정) 접수(~1.30.(화) 17:00), 최종 선정결과 발표(2.21.(수))
  - \* 심사 일정 및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선정 개소 수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일정) 지원금 교부(3월 초), 사업시행(5.2.~31. 포함 3개월 내외), 정산 및 실적보고(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공지 예정

■ 공모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홈페이지

■ 사업 문의 : 문체부 문화기반과(044-203-264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외협력팀(02-2077-2991)



□ 법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 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추진 배경

- 건립 타당성 부족 및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건립 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최소한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기준\* 제시

\* 공립 박물관 건립·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14년 8월)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증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평가개요

- (평가기간) 약 3개월 소요/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 공지
  - \* 상반기: 매년 2월 1일~4월 30일/ 하반기: 매년 8월 1일~10월 31일
- (평가대상)
  - (신규) 신규로 설립\*하는 모든 공립박물관
    - \* 기존 시설 활용한 재생사업, 유사시설의 운영 유형을 등록박물관으로 변경 시 포함
  - (증축·이전) 전시실·수장고 등을 포함하여 박물관의 증축 또는 이전을 계획하는 모든 공립박물관
- (평가 제외)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 (평가 신청 불가) 사전평가 3회 부적정 판정 사업
  - \* 3회 부적정 판정사업은 3회차 직후 신청(1회) 불가
- (재평가) 당초 '적정' 평가된 사업이 재정심사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 변경 등 연면적의 변화 또는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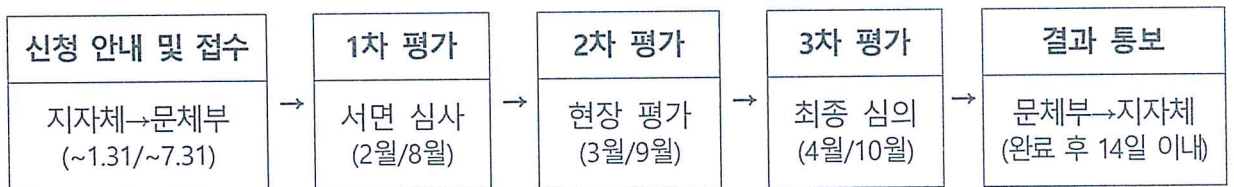


## □ 평가내용

- 입지조건, 설립계획 등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전시계획, 소장품 확보 및 전문인력(학예사) 확보방안 등
- 설립 이후 운영계획 등

## □ 평가방법

- (평가절차) 평가는 1차(서면평가)→2차(현장실사)→3차(최종평가)로 진행
  - \* 1차(서면), 2차(현장)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3차 최종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3차 최종평가에서 적정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 관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운영
- (평가원칙)
  - 예비평가\*와 본평가(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로 구분
    - \* 예비평가: 설립 사전 계획 수립 및 자체 보고, 주민 의견 수렴, 부지 매입, 학예사 확보 여부, 등록요건 충족, 문체부와 설립 협의 진행 등
  - 예비평가의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적요건 등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만 본평가 대상
  - 본평가는 1차(서면)평가에서 지자체 사업별로 점수화(100점 만점 기준), 2차·3차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정책 방향 및 설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부적정 여부 최종 심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 요구(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4조③의5)

- 시행 안내 : 사업 시행 전 지자체 공문 발송
- 사업 문의 : 문체부 문화기반과(044-203-2644)

□ **목적**

- (결과 환류) 공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결과 환류를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 도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공유워크숍('24년 1~3월 중 1회)/ 집중컨설팅('24년 3~12월)
  -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
- (참여대상) 평가인증 대상 기관('22년 공립박물관, '23년 공립미술관)
- (주요사업)
  - (워크숍)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전체 기관 대상 공유워크숍 진행으로 통한 평가인증 결과 환류 및 운영역량 강화 도모
    - \* 인증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학예직 포함하여 운영 관계자 참여 확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공유워크숍은 '23년 3월 개최(온라인)
  - (컨설팅) 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컨설팅을 진행하여 기관의 현 상황을 고려한 운영 발전 방향성 및 개선방안 제언
    - \* 미인증기관의 공통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제고 방안 마련, 각 기관의 강점 및 취약점 분석 등 개별 현황에 기반한 역량 강화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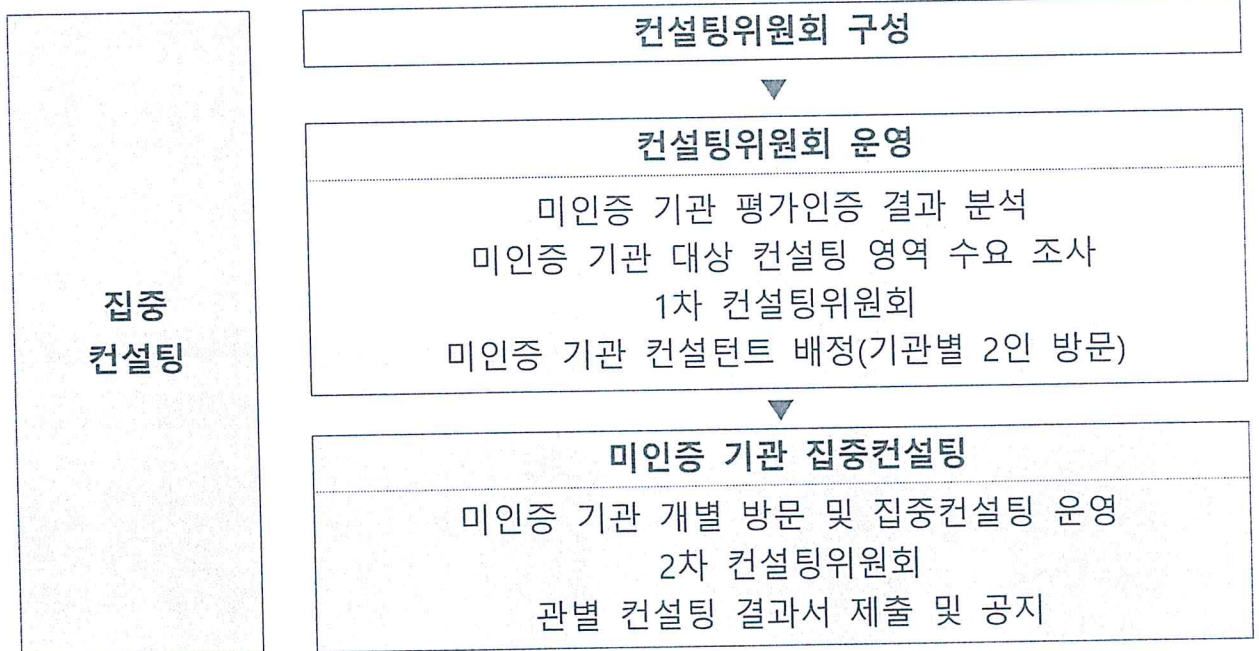
구분	평가대상	인증	미인증	비고
공립박물관('22년)	267	139	128	'23년도 역량강화지원 사업 참여(34관)
공립미술관('23년)	67	40	27	

□ 운영 단계

① 평가인증 공유워크숍(공립미술관)

공유 워크숍	평가인증 결과 공유 및 기초 발제	
	공립미술관 우수 사례발표	
	평가지표 분야별 결과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 적정성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적 책임 등		

② 집중 컨설팅(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시행 안내 : 사업 시행 전 공문 발송

▣ 사업 문의 : 문체부 문화기반과(044-203-2644)



## 4

#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 □ 사업 개요

- (공 모 명) ①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②공연예술 유통
- (사업목적) ▲지역 공연예술계 자생력 강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으로 중복수혜, 사각지대 방지 등 지원사업 효율 제고
- (지원기간) '24년 4월~12월
- (지원대상) 지역 문예회관 및 민간 공연단체
- (지원내용) 공연 제작·홍보·유통비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설명회(1월) → ▲공모신청(~1.31.) → ▲심의·선정(~3월) → ▲공연(4월~12월)· 전시(5월~10월)

### □ 주요 개선사항

- (매칭불발) '방방곡곡' 선정 후 매칭 불발 등 단체-문예회관 상호 불만  
⇒ 단체-공연장 사전 매칭 후 지원으로, 매칭 불발 방지
- (기관편중) 문예회관 역량에 따라 중복수혜·사각지대 등 편중 심각  
⇒ 지원금 규모별 순차 심의선정(대→중→소)으로, 중복수혜 방지

구분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명	문화취약지역 문화향유증진 및 공연문화 활성화	지역공연예술계 창제작 및 유통역량 강화
지원기간	'24년 4월~12월	
신청주체	①민간 공연단체·기획제작사 ②문예회관(서울 제외)	①민간 공연단체 ②문예회관(서울 제외) * 민간공연장의 경우, 신청주체로는 신청불가(협력대상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공연 제작·유통·홍보비	공연 제작·유통·홍보비 (공연최소조건) 연내 최소 2개 지역, 총 6회 이상의 유료공연 필수 개최
지원총액	총 132억 / 건별 최소 1천만원~최대 1억원 지원	총 92억 / 건별 최소 2억원~최대 5억원 지원
자부담	문예회관 신청의 경우 총사업비(자부담금+보조금)의 10% 문예회관 자부담금 책정 필수	총사업비(자부담금+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자부담금 책정 필수
지원장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오페라, 국악 * 공연의 주된 장르가 대중음악인 경우 제외	

# 붙임1

## 공연 창제작 유통 세부설명

구분	①지역맞춤형 중소규모 공연예술 유통(공모)	②중형 공연예술 유통(공모)	③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지정)
시행주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사업목표	문화취약지역 등 지역 문화향유 증진	지역공연예술계 창제작 및 유통역량 강화	광역시도 대표 공연장, 세계 수준으로 역량 강화
지원규모	132억 (6천만x220건)	92억 (4억x23건)	80억 (10억x8건)
운영 내용	지역민 수요 맞춤 중소규모 공연 콘텐츠 제공	공연단체 및 공연장 협력 중규모 공연 창제작 유통	국립단체-거점공연장 협업 대형 전막 공연
프로그램별 지원액	1천만~1억(국비) (자부담 포함 1.2천만~1.1억) *문예회관 자부담 10%	2억~5억(국비) (자부담 포함 2.9억~7.1억) *자부담 30%	10억원 내외(국비) *문예회관 자부담 10%
공모신청 주체	문예회관 또는 민간단체 (사전 협의 후 신청)	문예회관 또는 민간단체 (사전 협의 후 신청)	국립예술단체 (지정보조)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단가 1천만원~1억원 내 신청건수 제한 없으나,</li> <li>신청주체당 신청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 공연단체 &amp; 2개 이상 공연장 매칭 필수</li> <li>2개 이상 광역시도 소재 공연장, 총 6회 이상 공연 (서울 제외, 경기인천 포함) 예. 을숙도문화회관(부산) 4회, 제주문예회관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예술단체-광역시도 거점 공연장 사전 협의</li> <li>문예회관 자부담 10%는 지역 역량 강화, 교육 등 연계 사업으로 기획하여 문예회관이 직접 집행</li> </ul>
국비교부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예경→신청주체</li> <li>(정산) 이나라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예경→신청주체</li> <li>(정산) 이나라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예경→국립단체</li> <li>(정산) 이나라도움</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성, 수행능력 등 기본 배점 외, 지역 안배 차원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일부 문예회관 독식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예회관뿐 아니라 지역 민간공연장도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 (A단체 신청시, 협력공연장 B문예회관 C민간공연장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형 공모에 선정된 8개 지역거점공연장은 ①②형 공모사업 선정 제외</li> </ul>
공모일정	1월 공모, 2~3월 선정심사, 3월 선정발표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3형~2형~1형 순으로 내부 심사 진행		

※ 공연예술 유통 - 기획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접추진)

▣ 공모 안내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2733)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팀 (02-708-2225)



## 5

# 문화영향평가

### □ 사업개요

- (목적)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
-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사업

#### ◆ 필수 평가대상 및 가점 부과 사업

-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필수), ▲(국토부) 도시 재생 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 ◆ (참고) 과거 평가 사례

- (중앙부처 공모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문화재 돌봄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등
- (지자체 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하천 댐 건설 사업, 빈집프로젝트, 창업지원센터 사업,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생태복원사업, 문화예술진흥계획,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주어 발전기본계획,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마을정원조성사업 등

- (평가 유형) 평가 심도(수준)에 따라 자체<약식<전문평가로 구분·실시

평가 유형	내용	평가방법	비고 (소요기간)
자체평가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정책담당자) 자체평가서 작성제출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송부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1~2개월
약식평가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위원 평가	(정책담당자) 약식평가서 작성제출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통보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2~3개월
전문평가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 새로운 유형의 사업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외부 전문기관 공모·선정 →(평가수행기관) 평가 추진 →(정책담당자) 반영계획 제출	3~6개월

○ (평가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공통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가능성, 사회적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발전, 미래지향성
특성화 지표	※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 평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2. 5.(월) ~ 2. 21.(수) 공문 접수  
'24. 2. 5.(월) ~ 2. 23.(금) 시스템 접수
- (신청방법)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s://cupact.mcst.go.kr>) 입력
  -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 (선정규모) 60개 내외 사업
- (소요예산) 문체부 전액 지원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4년 추진계획

- 수요조사 : '24. 2. 5.(월) ~ 2. 21.(수) \* 첨부문서 온라인시스템 입력은 2.23.(금)까지
- 평가대상 선정 : '24. 3월 초
- 평가 안내 등 교육 : '24. 3월 중
- 평가 실시 : ① 자체 평가(4월~5월) ② 약식 평가(4월~6월)  
③ 전문평가(4월~9월)

■ 사업 안내 : 문화영향평가 누리집(<https://cupact.mcst.go.kr>)  
 ■ 사업 문의 : 문체부 문화정책과(044-203-25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단(02-2669-6959)